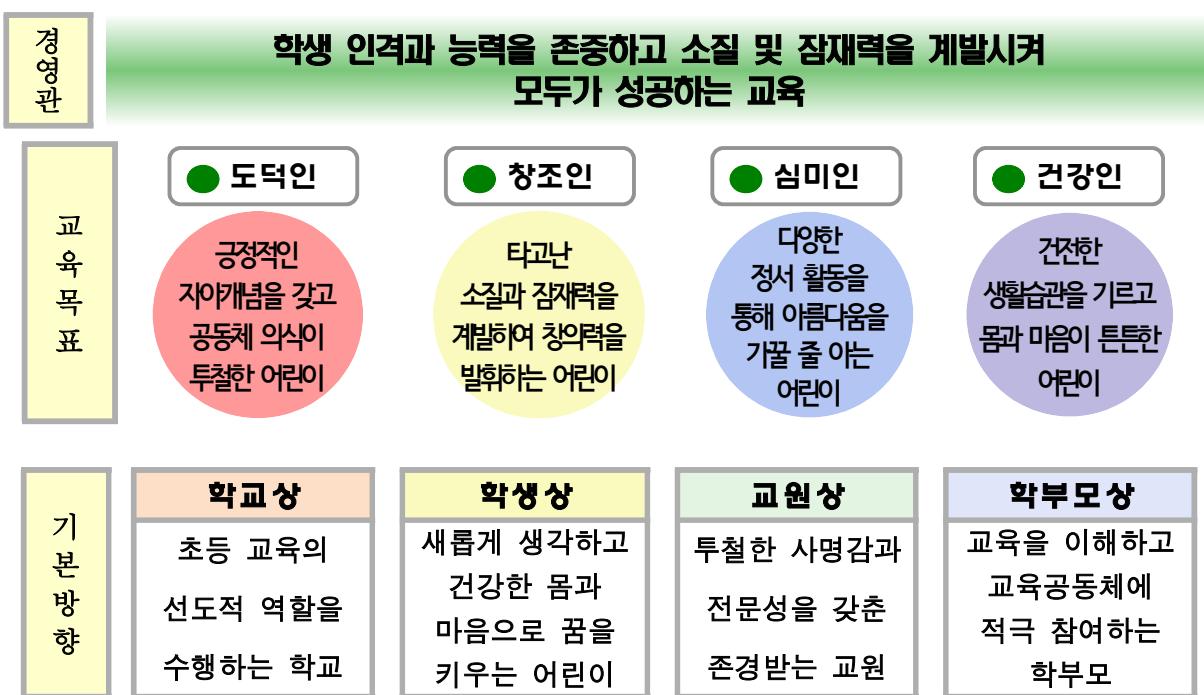


전 학생 모두가 성공하는 군산 부설 명품 교육  
**『2022 부설 교육』 이렇게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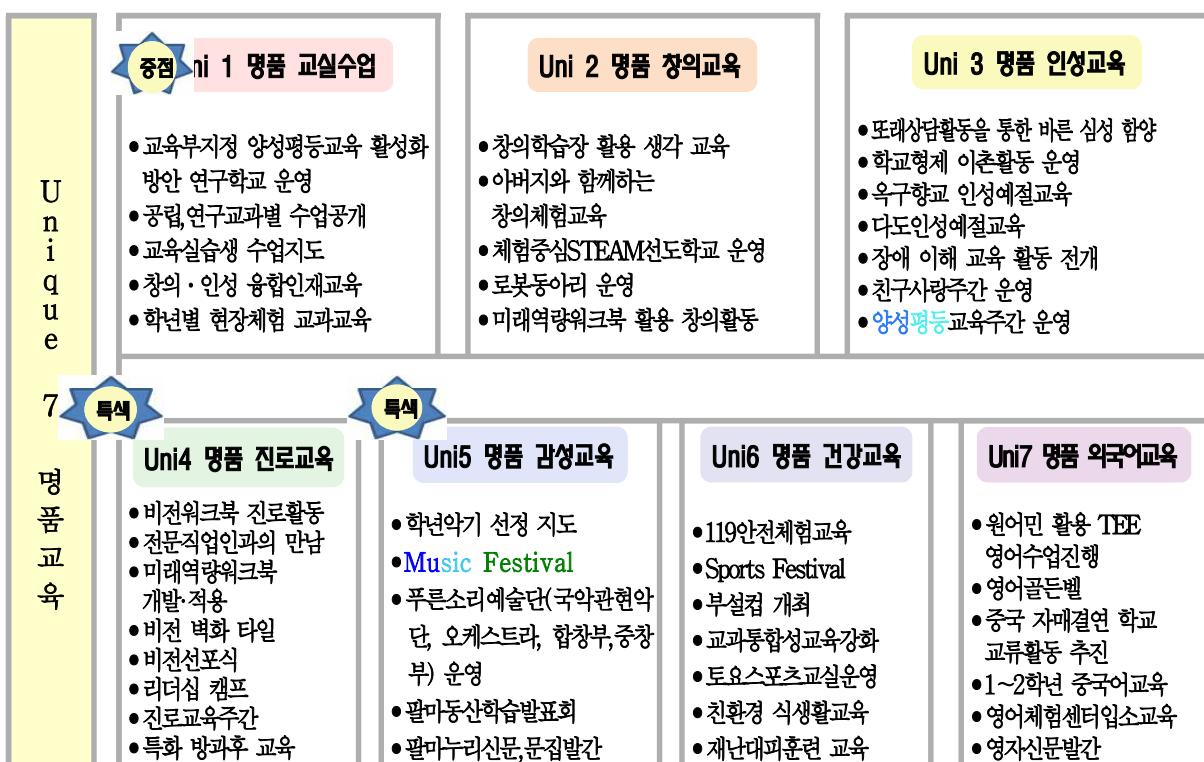


교육부 지정 상설 연구학교  
**전주교육대학교군산부설초등학교**  
The Attached Gunsan Elementary School of Jeon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http://school.jbedu.kr/ksbs>

# I. 우리 학교의 비전



## 감동과 성장이 있는 Unique 7 군산부설 명품교육



## II. 2021학년도 부설 교육 이렇게 했습니다.

### 1. 내실 있는 교육과정의 운영

#### 가. 기본학력 정착을 위한 평가 실시

- 기본학력 정착을 위해 진단평가 실시
- 학습자의 수행 정도를 알아보고 도와주는 수행평가 및 교사별 과정중심 평가

#### 나. 소질과 적성을 기르는 다양한 교육 활동 전개

-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이용한 예술 영재 교육 실시
  - 제42회 팔마동산종합학습발표회 재능 발표(영상 송출을 통한 비대면 행사 진행)
  - 5,6학년 1인 1악기 지도(5학년: 소금, 6학년: 단소)
- 꿈과 끼를 키우는 비전교육 실시
  - 진로체험학습의 날-6학년 부설초 선배와의 만남 및 전문직업체험 실시
  - 비전발표회 실시
- 수익자 부담의 방과후학교 실시(15개 부서 운영)
  - 컴퓨터, 중국어, 종이접기&토탈공예, 체로, 플롯, 바이올린 I, 바이올린 II, 과학실험, 주산, 로봇과학, 대금&소금, 영어회화, 방송댄스, 해금, 가야금
-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이용한 컴퓨터, 한자, 중국어, 창의교육, 보건, 학년특색사업, 이촌활동
- 아침독서활동을 통한 깊고 폭넓은 사고력 지도
- 학교 합창부 및 중창부 운영
  - 합창부 및 중창부 방과 후 연습(합창 주 1회, 중창 주 2회 연습)
  - 제19회 전라북도 119 소방동요경연대회 전북 본선대회 참가-장려상 수상
  - 제9회 노을창작동요제 장려상 수상
  - 군산시 생생문화재사업 문화재감성학교(동요교실)-'뚜벅이 군산여행','군산항' 음반 녹음
  - 전북초등음악교과연구회주관 뮤직비디오 7곡(중창 3곡, 독창 3곡) 선생님의 동요선율 창작음반 발표 촬영 및 뮤직비디오 제작
- 국악 관현악부 활동
  - 방과후 부서 개인 기량 향상을 위한 연습
  - 토요방과후 국악 관현악단 합주 연습
- 오케스트라부 활동
  - 오케스트라 단원(56명)토요방과후 오케스트라부 합주 연습
  - 매주 토요일 파트연습
  - 여름 및 겨울방학 캠프 실시
  - 신입단원 모집

#### 다. 과학 및 영재 교육 활동 강화

- 2021학년도 융합인재교육(STEAM) 유공 우수기관 교육부장관 표창(전북도내 초중고 유일)
- 2021학년도 한국과학창의재단 주최 'STEAM ON(溫) 융합교육 성과발표회' 전북대표
- 안전하고 내실 있는 과학 실험을 위한 시설강화 및 용구 교체
  - 안전장구 강화(보안경, 내열장갑, 실험용 안전 장갑 등)
  - 과학실험실 안전설비 확충사업 실시(6,500,000원 예산 지원)

- 안전한 실험 약품 관리(공기순환기, 밀폐형환기식 시약장 구입 및 설치, 폐수 및 폐시약통 교체)
- 과학실무사가 상시 배치되어 실험준비 및 안전한 실험활동 보조
- 2021학년도 군산융합체험마당(보고, 듣고, 느끼는 STEAM 체험전) 개최
  - 융합인재교육 활성화,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14개의 다양한 과학체험부스 체험
  - 본교 학생 150여명 참여
- 과학행사 진행
  - 여름, 겨울방학(STEAM)과학캠프 실시
  - 매월 과학 인사 초청 과학특강 실시(4차산업혁명시대를 이끌어 갈 리더십 양성 프로젝트)
  - 교육청 주관 과학탐구 교외대회 준비 특강 실시
  - 천체과학교실(부설에서 별일이야!) 행사 실시(6학년 대상)
    - 1부: 천체망원경의 원리, 천체망원경 조작 방법, 간이 천체망원경 만들기 등
    - 2부: 천체망원경으로 별자리 관측, 그리스도마신화와 함께 하는 별자리 이야기, 행성 관측
- 과학 및 수학 영재교육
  - 군산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등 각종 영재교육원 20명 이수 완료

#### **라. 6학년 현장체험(감성체험활동)학습 전개**

- 숙박형 1회에 걸친 테마식 체험 프로그램 실시
  - 롯데월드 놀이체험 학습
  - 도전과 협업의 주제가 담긴 단체 교우관계 개선 프로그램 운영
  - 지속가능 환경교육을 주제로 한 서천 국립생태원 참여 프로그램 체험
  - 충효 사상의 의미를 알고, 호국보훈의 정신을 함양하는 군산 군경묘지 탐방

#### **마. 다양한 체육활동을 통한 기초 체력 향상**

- 코로나19로 인한 이론 수업 위주의 기초수영교실 운영(1~6학년)
  - 구명조끼 사용법, 구명환 사용법, 폐트병 구조법, 심폐소생술 실습 및 구조요청 등
- 학급별 체육 활동을 통한 새천년건강체조, 민속놀이, 팔마산오르기 활동 등
- 토요스포츠클럽 및 신나는 주말 생활 체육 운영
- 학생건강체력평가(PAPS) 실시(5~6학년)

#### **바. 영어 교육의 활성화**

- 원어민 보조교사 채용 및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 진행
- 원어민과 함께하는 방학 중 캠프 운영
  - 영어기초캠프(3~4학년 대상), 영어회화캠프(5~6학년 대상) 실시
- 영어 행사
  - 영어 골든벨 대회 1회(3~6학년 전 학급 참가)
  - 스마트 러닝 기반 학습을 위한 스마트패드, KAHOOT프로그램 활용

#### **사. 방학 중 교육활동 전개**

- 음악캠프 운영
  - 전문 강사 초빙 단계적 합창 및 중창 지도
- 독서캠프 운영
  - 책 읽고 생각 나누기, 그림 그리기, 독서퀴즈, 주먹밥 만들기, 저자와의 만남 등

- 과학 캠프 운영
  - 미래사회 과학과 우리 생활 특강, 카테시안 다이버 만들기, 에어로켓 제작, 에어로켓 발사
  - 고무동력기 제작 및 비행 실험, 우산과 비치백 만들기, 회전잠만경 만들기, 배틀! 굴삭기를 만들어 쌀튀밥 이용하여 누가 더 정교하고 빠른지 대결 펼치기 등
- 국악캠프 운영
  - 대금, 해금, 향피리, 소금, 가야금, 타악기 및 관현악 합주곡 '방황'지도
- 오케스트라 캠프 운영
  - 바이올린, 첼로, 플룻, 클라리넷, 콘트라베이스, 팀파니, 타악기
  - '카르멘 서곡' '가면무도회 왈츠' 지도
- 영어캠프 운영
  - 스토리텔링, 노래 부르기, 쿠킹, 만들기, 영화보기, 게임 활동
- 비전캠프 운영
  - 진로 탐색, 전문직업인과의 인터뷰
  - 켈리그라피스트 체험, 제과떡 체험, 플로리스트 체험, 케잌 만들기 활동 등
- 진로상담캠프 운영
  - MMTIC 성격검사, 성격유형 토론, 상담 체육활동, 감정카드 게임
- SW교육캠프
  - 드라이빙 베이스 브릭 이용 나만의 자동차 모형 만들기, 디버깅 수행, 트레이싱 맵 기반 자율주행차의 미션 해결 과정 단계별 수행하는 로봇코딩 등
- 영어기초캠프
  - 영어 단어 익히기, 역할극, 샐러드, 트레일 믹스 만들기, 스토리북 활동
- 영어회화캠프
  - 우주를 주제로 한 단어 활용 게임, 프로젝트 학습, 프레젠테이션

#### **아. 교내 교원연수를 통한 역량 강화**

- 교육과학기술부 상설연구학교 주제인 '학생 진로탄력성 지원을 위한 진로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연수
- 창의·인성교육 및 연구회 운영을 위한 맞춤형 현장 연수
- 창의 및 스마트 교육을 위한 연수
- 감성지수 향상을 위한 음악 연수
- 교수·학습 방법 개선을 위한 연수
- 현장 지원형 맞춤형 직무 연수
- 스팀융합교육 연수

#### **자. 1인 1교과 수업공개의 날 운영**

- 학습 성과를 높이고 새로운 교수·학습방법 연구를 위한 최적의 학습방법을 적용한 수업공개
- 공립학교 초등 교사 대상, 교육실습생 대상, 학부모님 대상, 본교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수업공개 수업협의회를 통하여 우수 수업 기술 공유
- 수업공개 실시: 총 36회
  - 교생실습 중 교사 시범수업 6회 실시
  - 본교의 수업결손과 공립교사의 참관을 위해 방과 후 수업(화: 15:00-15:40, 수: 14:10-14:50) 실시
  - 공립학교 교원 대상 수업 공개(5회)
  - 연구성과발표회의 날 자율장학 수업공개(21개 교실)

#### **차. 학부모 이해 교육 강화**

- 학부모 교육 자료 '2021 부설교육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작 및 배포

#### **카. 다양한 방법의 학교 교육활동 홍보**

- 학교신문 팔마통신 2회 발간
- 학사력 제작 및 배포
- 학교.학급 홈페이지의 운영
- 학교 문집 팔마동산 42호 발간

#### **타. 발간 자료**

- 교생실습 지도교재 (참관, 수업, 실무실습 총 4권)
- 비전워크북: 1~6학년 학년별 6권
- 창의학습장: 1~2학년 1권(국,수,통,창체 등), 3~6학년 1권(국,수,사,과,영,예체능, 창체 등)
- 우리 아이 1학년이 되었어요 (입학초기적응자료)
- 부설 교육 이렇게 하겠습니다.
- 팔마동산 문집 42호
- 미래역량워크북: 학년군별 제작 발간(1~2학년 1권, 3~4학년 1권, 5~6학년 1권)

#### **파. 교단 일기 및 학교종이를 통한 학교생활 안내**

- 교실에서 있었던 일과 공부한 내용 안내 및 생활지도
- 학습 준비물 안내
- 교내외 행사 안내 및 신청 접수

## **2.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한 교육시설의 현대화**

- 연결통로 증축 및 후관동 내진보강공사
- 급식실 환경 개선
  - 급식실 오수관로 보수, 기존 급수배관 절단 및 우회 설치, 급식실 타일 · 도색 · 바닥보수작업 등
- 소방시설 및 방송시설 공사
  - 방화셔터 교체 및 방화문 연동선로 보수 등, 비상방송선로 보호장치 설치
- 1학년 2반 ~ 6학년 3반 각 교실 무선 인터넷 구축
- 본관동, 후관동, 식당 · 특별교실동 LED등기구 교체
- 쓰레기 분리수거장 구조물 제작 및 설치 · 보수작업
- 노후급식시설 현대화 및 급식기구 교체
- 정보인프라 고도화사업-신규 정보화기기 도입, 무선 Wifi 구축, 스마트 교실 구축
- 교육기자재 지원: 2학년 재학생 책걸상 72조 교체
- 특별교실동 외 1동 단열성능 개선공사
- 특별교실동 2층 벽면 환경 개선공사
- 본관동 외 1동 방수공사
- 교실 바닥 교체 및 보수공사
- 외부 파고라 철거 및 기타공사
- 강당동 정밀안전진단
- 식당 및 특별교실동 내진성능평가
- 후관동 단열성능 개선공사

## **3. 교육실습생 지도**

구 분	대 상	실습기간	지 도 내 용
참관실습	전주교대 1학년	10.4. ~ 10.8.	· 기본소양 · 수업참관
	전주교대 2학년	10.11. ~ 10.15.	· 기본소양 · 수업참관 · 효율적 교수
수업실습	전주교대 3학년	11.15. ~ 12.10.	· 기본소양 · 생활지도 방법 · 교수학습 지도법
실무실습	전주교대 4학년	5.24. ~ 6.18.	· 학급경영실무 · 학교사무처리 · 교수학습지도법

#### 4. 교육부 상설 연구학교 운영(사업 완료)

주제	독도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운영의 필요성 및 목적	<p>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 및 교원의 독도 영토주권 의식을 제고하고 코로나19 등으로 변화된 교육환경에서 활용 가능한 독도교육 방안을 마련하여 독도 사랑 실천을 위한 독도교육을 강화하고자 함</p>	
연구대상 및 기간	<p>▶ 연구대상 : 전주교육대학교군산부설초등학교 전교생 ▶ 연구기간 : 2021. 3. 1. ~ 2022. 2. 28.</p>	
운영 과제 및 실천 내용	<p>◆ 독도락(樂)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환경 기반 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독도교육을 위한 물적·인적 환경 기반 조성</li><li>·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구성원 역량 강화</li></ul>
	<p>◆ 독도락(樂) 프로그램 구안·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독도락(樂) 프로그램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운영</li><li>· 독도락(樂) 프로그램을 위한 창체 교육과정 편성·운영</li></ul>
	<p>◆ 학생 맞춤형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독도 감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li><li>· 학생 체험중심 독도교육 전개</li></ul>
일반화 자료	<p>가. 맞춤형 독도락(樂)프로그램 교육과정 편성 나. 체험 활동을 통한 독도 프로그램 편성 다. 미래역량(독도교육 활성화 프로그램) 워크북 제작 보급</p>	
기대되는 효과	<p>◆ 변화된 교육환경에서도 활용 가능한 학생 맞춤형 독도교육 프로그램 적용 ◆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도교육 프로그램 개발로 독도교육 활성화에 기여 ◆ 다양한 독도체험활동을 통한 독도사랑 및 영토주권의식 함양</p>	

### **III. 2022학년도 부설 교육 이렇게 하겠습니다.**

#### **1. 감동과 성장이 있는 Unique 7 군산부설 명품 교육**

##### **Uni 1. 감동과 성장이 있는 학습자 중심 명품 교실수업**

- 1교사 1연구 교과로 좋은 수업을 위한 수업 공개 및 수업 협의
- 좋은 수업을 위한 동학년 수업 동아리 활동 전개
- 좋은 수업의 발굴과 일반화를 위한 교생대상, 공립학교 대상 수업 공개
- 수업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초청 연수 및 자체 연수 활동
-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과 역량 함양 교육
- 학년별 특색있는 진로탄력성 Project 운영
- 양성평등교육 활성화를 위한 **공존성** 프로그램 구안 및 적용 운영
- 학습 진단 주간, 초등성장평가 및 평등교육과 책임교육 실시
- 교사 동아리 활동, 연구 활동을 통한 수업 역량 강화 활동

##### **Uni 2. 감동과 성장이 있는 명품 창의교육**

- SW(소프트웨어) 활용 교수.학습 전개 및 로봇동아리 운영
- 팔마산 숲 체험 환경사랑 교육 전개
- 창의학습장 개발.생각 아이콘을 활용한 자기학습력 함양
- 아버지와 함께하는 창의.소통 교육
- 아침 독서 활동, 독서종합시스템에 의한 독서교육 활동
- 창의 과학캠프, 과학탐구대회, 실험중심의 과학실 활용 수업 전개
- 학년별 현장체험학습 확대 운영
- 창의융합인재(STEAM)교육 전개
- 창의적 독서토론 교육 활동 운영 및 학교 신문 및 팔마문집 발간

##### **Uni 3. 감동과 성장이 있는 명품 인성교육**

- 학년간 소통으로 학우애를 키우는 이촌활동 전개
- 바른 인성실천 중심 현장체험활동 운영
- 옥구향교인성예절교육
- 다도인성예절교육
- 다름을 이해하는 장애이해교육 활동

- Wee Class 상담활동을 통한 바른 심성 함양
-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및 학교폭력전담기구 조직 운영
- 물물교환 학교 알뜰장터 운영
- 아름다운 어린이 발굴 시상
- 전교생 이촌 형제 활동을 통한 학우애 형성 및 공동프로젝트 프로그램 운영
- 나라사랑 통일교육, 역사교육 실시
- 독도교육주간 운영
- 인권감수성 교육 운영(1-6학년 대상)
- 양성평등교육주간 학기별 전교생 운영
- 독도 체험 프로그램 운영
- 다문화교육 실시
-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교통안전교육
- 민주적, 창의적 어린이회 운영
- 자기관리능력 향상 활동 전개

#### **Uni 4. 감동과 성장이 있는 명품 진로교육**

- 각 학년에 맞는 맞춤형 비전워크북 제작 활용
- 아침 및 창체시간을 활용한 비전워크북 지도
- 학년군별 미래역량워크북(진로프로그램) 지도
- 전문 직업인과 함께 하는 진로체험학습 운영
- 비전 벽화타일 제작 및 학급 비전 환경판 구성
- Wee Class 상담교사와 함께하는 학생 진로 적성검사, 맞춤형 진로 상담 활동 전개
- 다양한 방과후 활동 운영

#### **Uni 5. 감동과 성장이 있는 명품 감성교육**

- 학년 악기 선정 집중지도(오카리나, 하모니카, 단소, 소금)
- 국악 예술 강사 활용 국악 지도(1, 2, 5, 6학년)
- Music Festival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
- 오케스트라, 국악관현악부, 합창부, 중창부, 그룹밴드 운영
- 1인 1 방과후학교 활동 권장(토탈공예, 바이올린, 대금, 가야금, 소금, 플룻, 첼로 등)
- 방학 중 합창.오케스트라.국악 캠프, 독서 캠프, 비전캠프 운영
- 팔마동산종합학습발표회(학생.학부모 공연 관람) 공연부.전시부 발표

## **Uni 6. 감동과 성장이 있는 명품 건강교육**

- 부설컵 체육대회 운영
  - 학년에 맞는 수준별 경기 선정
- 부설가족 한마음 Sports Festival 운영
- 토요휴업일 주말생활체육학교(토요스포츠교실) 운영
- 학년별 학교스포츠클럽활동 프로그램 운영
- 보건 안전 교육 강화
  - 7대 안전 교육(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약물 및 사이버중독예방,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
  - 임실 119 안전체험센터 입소 교육(2.3.5.6학년)
  - 기초수영 실습교육(1~6학년) 운영
- 보건교사, 영양교사 수업을 통한 건강생활 지도

## **Uni 7. 감동과 성장이 있는 명품 외국어교육**

- TEE 수업전개
  - 원어민 교사를 활용한 TEE 수업 진행
  - 영어 교과전담 배정 운영
-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영어골든벨 행사 및 영어캠프 운영
- 1~2학년 중국어 원어민교사 중국어 수업 및 방과후 학교 중국어반 운영
- 중국 북경 명원교육서원실험소학교 자매결연
-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한자교육 시간 배정 운영

## **2. 부설의 특수 업무**

### **가. 교육실습생 지도**

구 분	대 상	실습기간	지 도 내 용
참관실습	전주교대 1학년	4. 18. ~ 4. 22.	· 기본소양 · 수업참관
	전주교대 2학년	10. 17. ~ 10. 21.	· 기본소양 · 수업참관 · 효율적 교수
수업실습	전주교대 3학년	11. 14. ~ 12. 09.	· 기본소양 · 생활지도 방법 · 교수학습 지도법
실무실습	전주교대 4학년	5. 23. ~ 6. 17.	· 학급경영실무 · 학교사무처리 · 교수학습지도법

### **나. 지역 선도 학교 역할 수행**

- 학교.학년.학급 교육과정 편성 운영
- 교육부지정 상설연구학교 연구내용 일반화
- 학습지도방법 개선을 위한 공립학교 교사 대상 공개 수업 실시

### 3. 교육부 상설 연구학교 운영

주제	양성평등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운영의 필요성 및 목적	성(Gender) 불평등 문제를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문제로의 의식 전환을 제고하고 코로나19 등으로 변화된 교육환경에서 활용 가능한 양성평등 기반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여 공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인간 존중을 바탕으로 보편적 성 인지 감수성 향상 및 사회적 담론에 적응하고 대처할 수 있는 의사소통 역량을 갖춘 인재를 기르고자 함
연구대상 및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연구대상 : 전주교육대학교군산부설초등학교 전교생</li><li>▶ 연구기간 : 2022. 3. 1. ~ 2024. 2. 28.</li></ul>
운영 과제 및 실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공존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환경 기반 조성<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양성평등교육을 위한 물적·인적 환경 기반 조성</li><li>·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구성원 역량 강화</li></ul></li><li>◆ 공존성 프로그램 구안·적용<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양성평등 프로그램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운영</li><li>· 양성평등 관련 교육과정 분석 및 지도요소 추출</li><li>· 학생 참여형 양성평등 교육주간 운영</li></ul></li><li>◆ 학생 맞춤형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양성평등 감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li><li>· 학생 체험중심 양성평등 교육활동 프로그램 전개</li><li>· 양성평등 교육활동 블랜디드 러닝 운영</li></ul></li></ul>
일반화 자료	가. 생활 장면 기반 양성평등 프로그램 구안·적용을 통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나. 직·간접 체험 활동을 통한 양성평등 교육 프로그램 편성 다. 미래역량워크북- <a href="#">공존성</a> 교육 활성화 프로그램 제작 보급
기대되는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변화된 교육환경에서도 활용 가능한 학생 맞춤형 양성평등교육 프로그램 적용</li><li>◆ 교육과정과 연계한 양성평등교육 프로그램 개발로 양성평등교육 활성화에 기여</li><li>◆ 다양한 양성평등체험활동을 통한 성인지 감수성 향상 및 남녀평등 의식 제고</li></ul>

# 전주교육대학교군산부설초등학교 생활규정

## 제3장 학생 생활

### 제21조【기본행동】

- ① 학교구성원 모두는 서로를 존중한다.
- ② 욕설, 비난 등 모욕적인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다.
- ③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 ④ 다른 사람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만한 글, 상징 등을 포함한 복장과 장식물을 착용하지 않는다.
- ⑤ 성(性)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게 행동한다.
- ⑥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권한과 지시를 존중하고 따른다.
- ⑦ 교사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개선을 요구한다.

### 제22조【수업 태도】

- ① 수업을 비롯한 교육활동의 시작과 끝 시간을 지킨다.
- ② 수업내용과 무관한 말과 행동, 소음 등으로 교사의 수업 진행과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는다.
- ③ 교사의 허락 없이 해당 과목 이외의 내용을 공부하지 않는다.
- ④ 교사의 허락 없이 수업 중 교실 안팎을 돌아다니지 않는다.
- ⑤ 수업에 필요한 교재, 준비물을 가지고 참여한다.
- ⑥ 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수면이나 휴식이 꼭 필요할 때는 교사에게 허락을 받는다.

### 제23조【휴식시간과 여가활동】

- ① 학교의 장, 교직원은 학생들의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을 보장한다.
- ②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에 다른 사람의 휴식을 방해하지 않는다.
- ③ 여가시간에 전산실, 음악실, 체육관, 도서관 등의 특별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규칙을 지킨다.
- ④ 교사의 허락 없이 학교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 제24조【용의복장】

- ① 복장은 반드시 군산부설초등학교가 정한 교복을 착용한다.  
교복은 동복, 간복, 하복으로 구분하여 입으며 명찰을 단다.  
단, 겨울철에는 교복 위에 학교가 지정한 노란색의 코트를 입을 수 있다.  
또한, 간복을 입을 시는 흰 타이즈나 목이 긴 흰 양말을 신는다.
- ② 체육 수업 시간에는 학교가 기정한 체육복을 입고 반드시 운동화를 신는다.
- ③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하고 학생 신분에 맞는 것으로 한다.
- ④ 가방은 자유로이 하되 학생 신분에 맞는 것으로 한다.
- ⑤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또한 과한 화장, 머리 염색, 귀걸이 착용 등은 교육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금지한다. 그리고 문신 등의 신체 훼손 행위는 절대 금한다.

## 제25조【시설이용과 환경】

- ① 학교의 시설물을 아끼고 학습도구를 소중히 사용한다.
- ② 방과후나 휴일에 학교 시설 이용은 학교의 장에게 허락을 얻는다.
- ③ 수돗물, 전기 등을 낭비하지 않고 에너지 절약을 실천한다.
- ④ 쾌적한 수업과 학급생활을 위해 청결, 정리정돈 등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 제26조【개인 소유물】

- ① 다른 학생과 교사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 ②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못 쓰게 만들거나 훔쳤을 때는 학생 또는 보호자가 책임진다.

**제27조【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는 물품】**학교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소지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의 장이 특별히 허락한 물품은 예외로 한다.

1. 성냥, 라이터, 폭죽, 미용 기구(드라이기, 고데기) 등의 인화물질이나 전열기
2. 칼, 쇠파이프, 공구류, 고무총, 각목 등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물품
3.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4. 모든 형태의 도박 물품
5. 인권침해 또는 폭력 행위를 표현하는 물품
6.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나 물품
7.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8. 차량이나 오토바이

9. 기타 「청소년 보호법」 제2조<sup>1)</sup>에 따른 청소년유해 매체물·약물·물건 등

## 제28조【소지품 검사】

- ① 학생과 교직원을 해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하고, 그것을 사용할 위험이 있을 경우 해당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 ② 소지품 검사가 가능한 상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7조 제1항이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2. 제27조 제1항이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본인 또는 다른 사람과 흡입할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 ③ 소지품을 검사할 때는 학생의 동의를 얻고 여학생은 여교사, 남학생은 남교사가 실시하여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간결하고 신속하게 한다.
  - ④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한 후 협의하여 대처하되, 상황이 급박한 경우는 먼저 대처하고 나중에 학교의 장에게 보고한다.

## 제29조【학생 개인물품 관리】

- ① 제27조와 제28조와 관련하여 학생 또는 교직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과 현행법상

- 
- 1)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매체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 및 비디오물
    -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
    - 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
    - 라. 「공연법」에 따른 공연(국악공연은 제외한다)
    - 마.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정보
    - 바. 「방송법」에 따른 방송프로그램(보도 방송프로그램은 제외한다)
    - 사.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주로 정치·경제·사회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신문은 제외한다), 특수일간신문(경제·산업·과학·종교 분야는 제외한다), 일반주간신문(정치·경제 분야는 제외한다), 특수주간신문(경제·산업·과학·시사·종교 분야는 제외한다), 인터넷신문(주로 보도·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기사는 제외한다)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 아.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정치·경제·사회·시사·산업·과학·종교 분야는 제외한다),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및 그 밖의 간행물
    - 자.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간행물, 전자출판물 및 외국간행물(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매체물은 제외한다)
    - 차.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과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매체물에 수록·제재·전시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포함된 상업적 광고선전물
    - 카. 그 밖에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물
  3.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제7조 제1항 본문 및 제11조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여성 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 나. 제7조 제1항 단서 및 제11조에 따라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심의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청소년이 소지하는 것이 부적절한 물품은 학교가 보관하며, 즉시 학생의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학교가 보관하고 있음을 알린다.

- ② 학교가 보관하고 있는 학생의 물품은 5일 이내에 보호자와 상담한 후 즉시 보호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을 교육활동 시간에 부적절하게 사용한 경우는 해당 교육활동 시간 동안 제출하도록 하여 교사가 보관할 수 있다.

### 제30조【전자기기 사용】<sup>2)</sup>

- ① 학교교육과정 운영 중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활동을 위해 교사가 허락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②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를 사용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 ③ 교사는 교육활동 시간에 전자기기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학생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④ 학생이 제1항의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교사가 주의를 줄 수 있으며, 학생이 주의를 3회 받으면 정규 교육활동 시간에 한해 5일 이내에서 해당 전자기기를 보관 조치할 수 있다.
- ⑤ 제4항의 보관 조치가 3회 이상일 때 또는 학생이 전자기기 제출을 거부했을 때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 ⑥ 고사(시험)기간 동안 전자기기는 등교할 때 담임교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고사(시험) 중 전자기기를 지니고 있거나 사용하면 부정행위로 처리한다.

### 제31조【정보통신 윤리】

- ① 사이버 공간에서 바른 말을 사용한다.
  - ②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인권과 사생활을 보호한다.
- 
- 2)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13조 ④는 “학교의 장은 학생의 휴대전화기, 그 밖에 전자기기의 소지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수업방해의 방지 등 교육목적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학교의 규정으로 학생의 휴대전화기 사용과 그 밖에 전자기기의 소지를 규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의미는 전자기기 사용을 제한하거나 강제하기보다는 학생에게 사용예절을 지속적으로 교육하여, 학생 스스로 시간과 장소에 따라 휴대전화기와 전자기기 사용을 자제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더 바람하다는 의미이다. 학교에 따라 등교할 때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여 하교할 때 되돌려주는 방식을 운영하는 사례가 있으나 사적소유물에 대한 권리침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에 대해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같은 법 제18조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 \* 휴대전화 보관 후 분실 시 학교는 우선 분실신고를 한 뒤, 학교 내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학교안전공체중앙회에 신청하면 되고, 학교안전공체중앙회는 이를 심사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적정액을 지급한다. (교육부), 학교 관리 중 분실한 휴대폰 등 보상 지원계획 안내(인성건강과-35456 2013.12.17.)
  - \* 일부 학교의 학교규칙에서 학생들의 학교 내 전자기기 사용과 관련한 별칙으로 전자기기를 학교가 상당 기일 동안 일시 수거하는 사례가 있음. 방과 후에도 학생들이 전자기기를 휴대하지 못해 안전과 관련된 긴급 상황 시 구조 요청 등을 할 수 없는 등 안전이 우려됨. 학교규칙 운영 및 제·개정 운영 안내(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2919 2014.5.19.)
  - \* 학생개인물품 소지 관리에 관한 정책권고(민주시민교육과-3800 2019. 5. 3.)

존중하고 보호한다.

- ③ 음란, 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를 공유하거나 학교에 가지고 오지 않는다.
- ④ 다른 사람의 정보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제32조【체벌금지】** 학교에서 체벌에 해당하는 모든 행위는 금지하며, 특히 금지하는 체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sup>3)</sup>

1. 도구를 이용한 체벌
2. 손이나 발 등 신체를 사용하는 체벌
3. 반복적, 지속적 신체 고통을 느끼게 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
4. 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5. 학생들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 등을 느끼게 하는 언어적 폭력

**제33조【교사의 권한】**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사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적 상담과 조언
2. 교육환경 조성
3. 행동개선 요구
4. 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5.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소집 요구와 의견 제출
6. 교권보호위원회 구제신청

### **제34조【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

3) 체벌금지 조항과 교사의 권한 및 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에 관한 항목을 반드시 넣도록 권고하며, 이는 교원의 교육활동의 준거가 되기도 하며 최소한의 학생지도의 기준선을 명시한다는 의미가 크다.

※ 체벌 금지관련 근거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갖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⑧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학교폭력"이란 학교内外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아동복지법」 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 ②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9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② 학교교육과정에서 체벌은 금지된다.

- ① 교사는 학생과 상담하여 먼저 문제행동의 원인을 파악한다.
- ② 교사는 학생의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교육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기
  2. 교실 내 특정 공간으로 이동시키기
  3. 적정한 수준의 학습 과제 부여 또는 방과 후 교육
  4. 망가진 시설, 물품, 오염 등에 관한 원상복구 요구
  5. 학부모 통보와 상담
  6. 기타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마련한 인권우호적인 교육적 조치
- ③ 교사가 상담과 교육적 조치를 반복해도 학생이 행동 변화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35조【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학교 안팎에서 다른 사람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때, 학생의 보호자가 책임진다.

### **제36조【등하교 생활】**

- ① 등·하교 시 통학 방법은 개인의 자율적 의사에 따르고 학부모 차량이 학교에 진입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② 개인의 의사에 따라 셔틀 버스를 이용 시 스스로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힘쓴다.
- ③ 교통사고의 위험으로 자전거, 킥보드의 등하교는 금지한다.

# 똑똑한 인터넷 · 스마트폰 활용 안내

학생들에게 학업 스트레스, 학교 폭력,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중독 등 주변에는 참 불안한 환경이 많아졌습니다. 스마트폰 등을 사용한 인터넷 문화는 우리들이 TV 시청을 하는 것만큼 일반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 속에서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무조건 막기보다는 스마트폰을 적절하고 학업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지도해 준다면 어떨까요? 사용하지 말라는 말을 듣기 전에 현명하게 사용한다면 친구들 사이에서도, 부모님들과의 관계에서도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재미도 있고 도움도 되는 학생들에게 유용한 앱을 활용하게 해주세요.

요즘은 글로벌 시대입니다. 학생들도 국내 소식뿐만이 아니라 해외 뉴스 앱을 통한 소식과 교육 등을 스마트폰을 통해 가까이 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업 증진에 유용한 앱은 따로 컴퓨터를 켜고 찾지 않아도 장소와 시간을 잘 활용한다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므로 필요한 내용이나 궁금한 내용을 손쉽고 빠르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 ★ 스마트폰, 필요할 때에만 자녀의 손에 지녀 사용하게 해주세요.

부모님들께서 생각하시는 스마트폰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학업 방해일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손에 지니게 되면 학업 방해는 당연합니다. 집중하기 어렵게 하는 메시지 도착 알림 소리로 친구들과 메시지를 주고받다 보면 시간은 금방 흘러갑니다. 진동으로 해놓고 필요할 때만 손에 지녀 사용하면 어떨까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하기 힘들다면 부모님과 선생님께 도움을 청하여 스마트폰을 잠시 맡겨놓고 학업에 집중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 ★ 친구들과 대화할 때는 눈으로 대화하도록 가르쳐 주세요.

친구들과 대화할 때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대화하면서도 다른 친구들과 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하는데 이는 시간도 허비될 뿐 아니라 친구와의 진심 어린 대화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과 만나서는 휴대폰보다 눈으로 귀로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 ★ 스마트폰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비싼 가격과 통신비를 지급해야 하는 스마트폰은 결코 자랑거리는 아닙니다. 새로운 기기가 나올 때마다 스마트폰을 교환하는 것은 비용 면에서도 환경 면에서도 결코 좋지 않습니다. 지금도 저희 청소년들에게는 과한 스마트폰 기능이 많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자랑거리가 아닌 통신과 소통의 수단입니다.

출처: <https://if-blog.tistory.com/1715> [교육부 공식 블로그]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학교생활 안내

아침 교통안전 지도시간 운영	<p>▶ <b>8:00~8:40</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임교사(담당교사), 녹색어머니 발열체크, 손소독, 마스크 분배 후 교통지도</li> </ul>																							
■ 등교시간 운영	<p>▶ 등교 전 건강상태 자가진단 실시 - 앱을 이용한 <b>자가진단 참여 후 등교</b></p> <p>▶ <b>코로나19 종식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8:40까지 등교 허용</b></p> <p>(학생 거주지가 군산 지역 전역에 분포되어 있어 등교시간이 집중되지 않으므로 학년별 등교 시간은 따로 구분하지 않음)</p>																							
■ 학교시간 운영	<p>▶ <b>학생들이 겹치지 않게 시간차를 둔 탄력있는 학사 운영</b></p>																							
■ 점심시간 운영	<p>▶ <b>학생간 접촉이 최소화될 수 있는 학교 급식 운영 방안</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석 회전율 향상을 위한 조리나 배식이 용이한 식단 변경</li> <li>- 시차배식, 급식시간 연장을 통한 한 방향 식사 운영</li> <li>-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위한 식당 내 한 줄 서기 등</li> <li>- <u>학생 자율배식대 한시적 운영 중단(단, 배식대에서 추가 배식 가능)</u></li> <li>- 식탁칸막이설치를 통한 안전한 급식 운영</li> </ul> <p>▶ <b>학년별로 시차를 두어 운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년·학급별 급식 시 배식 시간 준수(학생 간 접촉 최소화)</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배식시간</th><th>비고</th></tr> </thead> <tbody> <tr> <td>2학년</td><td>12:10 ~ 12:15</td><td rowspan="6">※ 1학년: 11:30~12:10 (한시적 적응기: 3.3~3.11) ※ 환기 및 식탁, 의자, 칸막이 소독 실시 (방역도우미 3명을 활용)</td></tr> <tr> <td>1학년</td><td>12:20 ~ 12:25</td></tr> <tr> <td>5학년</td><td>12:30 ~ 12:35</td></tr> <tr> <td>3학년</td><td>13:00 ~ 13:10</td></tr> <tr> <td>4학년</td><td>13:10 ~ 13:20</td></tr> <tr> <td>6학년</td><td>13:25 ~ 13:30</td></tr> </tbody> </table> <p>▶ 식사 전 발열체크 및 깨끗이 손씻기·손소독</p> <p>▶ 선생님과 함께 식사하기(대화 자체, 자기 음식은 자기만 먹기 등)</p> <p>▶ 식사 후 물컵 사용하기(식사 전 또는 식사 중 사용하지 않기)</p> <p>■ <b>학부모님 협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공무 외 학교식생활관 출입 금지(급식모니터링 한시적 중단)</b></li> </ul>	구분	배식시간	비고	2학년	12:10 ~ 12:15	※ 1학년: 11:30~12:10 (한시적 적응기: 3.3~3.11) ※ 환기 및 식탁, 의자, 칸막이 소독 실시 (방역도우미 3명을 활용)	1학년	12:20 ~ 12:25	5학년	12:30 ~ 12:35	3학년	13:00 ~ 13:10	4학년	13:10 ~ 13:20	6학년	13:25 ~ 13:30							
구분	배식시간	비고																						
2학년	12:10 ~ 12:15	※ 1학년: 11:30~12:10 (한시적 적응기: 3.3~3.11) ※ 환기 및 식탁, 의자, 칸막이 소독 실시 (방역도우미 3명을 활용)																						
1학년	12:20 ~ 12:25																							
5학년	12:30 ~ 12:35																							
3학년	13:00 ~ 13:10																							
4학년	13:10 ~ 13:20																							
6학년	13:25 ~ 13:30																							
■ 오미크론 대응 학사운영 안내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분</th><th>유형1</th><th>유형2</th><th>유형3</th></tr> <tr> <th>학급단위 등교중지 (확진+격리)학생비율 <b>0%</b></th><th>학급단위 등교중지 (확진+격리)학생비율 <b>50% 미만</b></th><th>학급단위 등교중지 (확진+격리)학생비율 <b>50% 이상</b></th></tr> </thead> <tbody> <tr> <td>등교</td><td>전체등교</td><td>일부학생 등교 + 등교중지 학생 원격수업</td><td>전면 원격수업</td></tr> <tr> <td>원격 수업</td><td>×</td><td>대체학습: 교실수업장면 실시간 화상 제공 기본</td><td>교육과정 시간표에 따라 실시간 쌍방향 화상수업</td></tr> <tr> <td>돌봄교실</td><td>○</td><td>○</td><td>○</td></tr> <tr> <td>방과후학교</td><td>○</td><td>○</td><td>온라인 또는 연기, 종지</td></tr> </tbody> </table>	구분	유형1	유형2	유형3	학급단위 등교중지 (확진+격리)학생비율 <b>0%</b>	학급단위 등교중지 (확진+격리)학생비율 <b>50% 미만</b>	학급단위 등교중지 (확진+격리)학생비율 <b>50% 이상</b>	등교	전체등교	일부학생 등교 + 등교중지 학생 원격수업	전면 원격수업	원격 수업	×	대체학습: 교실수업장면 실시간 화상 제공 기본	교육과정 시간표에 따라 실시간 쌍방향 화상수업	돌봄교실	○	○	○	방과후학교	○	○	온라인 또는 연기, 종지
구분	유형1		유형2	유형3																				
	학급단위 등교중지 (확진+격리)학생비율 <b>0%</b>	학급단위 등교중지 (확진+격리)학생비율 <b>50% 미만</b>	학급단위 등교중지 (확진+격리)학생비율 <b>50% 이상</b>																					
등교	전체등교	일부학생 등교 + 등교중지 학생 원격수업	전면 원격수업																					
원격 수업	×	대체학습: 교실수업장면 실시간 화상 제공 기본	교육과정 시간표에 따라 실시간 쌍방향 화상수업																					
돌봄교실	○	○	○																					
방과후학교	○	○	온라인 또는 연기, 종지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준수사항

## 1 새로운 학교 방역수칙

1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미접종자는 기본접종하기</li><li>· 2차 접종 유효기간 만료 전 3차 접종하기(대상자에 한함)</li></ul>
2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 특히 감염위험시설(밀폐·밀접·밀집 환경)</li><li>· 감염취약시설(요양시설)과 학교에서 반드시 보건용 마스크(KF80 이상) 착용하기</li></ul>
3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30초 비누로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로 가리고 하기</li></ul>
4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상시 환기를 원칙으로 하되, 기상 상황 등으로 상시 환기가 어려운 경우 쉬는 시간마다 환기(맞통풍)하고, 손이 많이 닿는 곳(문고리, 스위치 등)은 1일 1회 이상 소독하기</li></ul>
5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사적 모임의 규모와 시간은 최소화하기</li></ul>
6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고위험군(60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 만남 자제하기</li></ul>

## 2 코로나19 관련 등교 기준

3월14일부터 방역당국 통보에 의한 등교 기준이 아래 표와 같이 변경됩니다.

구 분	방역당국 통보	격리기간	검사 권고	등교 기준
“내가” “학생이”	확진자인 경우	7일 격리	-	등교 중지
	밀접접촉자인 경우 =동거인, 가족 확진	10일간 수동감시	3일내 PCR검사, 6~7일차 신속항원검사	등교 가능 * PCR검사 결과 음성 확인 후 등교
나(학생)의 “가족=동거인이”	방역당국 관리 밀접접촉자인 경우	격리기간 없음	수동감시 지정일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	등교 가능

\* 근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제11판」(지자체용) 및 「코로나19 격리체계 개선 시행기준 안내(방대본)」 등

\*\* (격리기간 산정)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을 기준으로 7일

# 청렴교육(청탁금지법의 이해)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누구에게나 깨끗하고 공평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정하였습니다.
- 학부모님과 관련된 적용대상은 공직자 등(유·초·중·고등학교 교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 공직자 등의 배우자,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학교운영위원회 위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등), 부정청탁 및 금품을 제공한 일반국민입니다.

## ■ 부정청탁의 금지

- ▶ '입학, 성적, 수행평가 등 학교업무의 처리 · 조작'은 부정청탁 금지 행위 14가지 중 한 가지입니다.

- ▶ 위반 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제3자를 통해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 1천만원 이하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민간인)  
⇒ 2천만원 이하

제3자를 통해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등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형사처벌

## ■ 금품등의 수수 금지

- ▶ 누구든지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 ▶ 위반 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백만 원 이하의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등  
\*배우자가 수수한 금품 등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등

\*금품 등을 공직자 또는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  
⇒ 수수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백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백만 원 초과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과태료

형사처벌

# 학교폭력 예방교육

## ◆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학교内外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 학교폭력 유형◆ - 이런 행동은 하지 말아요!

유형	예시 상황
 <b>신체폭력</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고의적으로 건드리거나 치는 등 시비를 거는 행위</li><li>▶ 때리는 행위(다른 사람을 시켜서 때리는 행위 포함)</li><li>▶ 목을 조르는 행위</li><li>▶ 꼬집는 행위</li><li>▶ 장난을 가장해서 심하게 때리거나 밀치는 행위</li><li>▶ 신체적인 위협을 가하는 행위</li><li>▶ 학용품 등 물건이나 흉기를 이용해서 상해를 입히는 행위</li><li>▶ 신체부위에 침을 뱉는 행위 등</li></ul>
 <b>사이버 폭력</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남에게 해를 가하는 행위</li><li>▶ 학교 게시판이나 인터넷 사이트에 특정인에 대해 비방·험담하는 글을 올리는 행위</li><li>▶ 특정인에게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등을 통해 비난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li><li>▶ 특정인에 대해 안티카페를 만들어 험담하는 게시글을 올리고 공유하는 행위</li><li>▶ 특정인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발송하는 행위</li><li>▶ 특정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인터넷상에 유포하는 행위</li><li>▶ 특정 행동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본인에게 수치심을 주는 행위 등</li></ul>
 <b>언어폭력</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말로 위협하거나 협박하는 행위</li><li>▶ ▶ 욕설을 하는 행위</li><li>▶ 혐담을 하는 행위</li><li>▶ ▶ 조롱하거나 비웃는 행위</li><li>▶ 모욕을 주는 행위(다른 사람이 누군가를 모욕하도록 설득하는 행위 포함)</li><li>▶ 약점을 들춰서 괴롭히는 행위</li><li>▶ 본인이 싫어하는 별명을 부르며 놀리는 행위</li><li>▶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 등</li></ul>
 <b>따돌림</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고의적으로 따돌리는 행위(SNS에서도 포함)</li><li>▶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고 무시하는 행위(SNS에서도 포함)</li><li>▶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하는 행위(SNS에서도 포함)</li><li>▶ 친구의 접근을 막는 등 따돌림을 부추기는 행위(SNS에서도 포함)</li><li>▶ 주변 친구들이 도우려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li><li>▶ 책상, 소지품 등을 감추거나 버리는 행위 등</li></ul>
 <b>금품갈취</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돈이나 물건을 빼앗거나 감추는 행위</li><li>▶ 돌려 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는 행위</li><li>▶ 옃, 문구류 등을 빌린다며 되돌려주지 않는 행위</li><li>▶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 등</li></ul>

유형	예시 상황
 강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li> <li>▶ 속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과제 대행, 게임 대행, 심부름 등을 강요하는 행위</li> <li>▶ 협박 등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 등</li> </ul>
 성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li> <li>▶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li> <li>▶ 폭행협박을 하여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등의 행위 등</li> </ul>

###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의 역할◆ - 가정에서 꼭 지도해 주세요!

1. 내 자녀도 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2. 수시로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자녀 개인의 행동별달 상황 및 교우관계를 파악합니다.
3. 자녀에게 생명의 존귀함, 상호 인권(인격) 존중, 역사자지 책임 및 준법 의식 등을 인식시킵니다.
4. 자녀에게 혹시 폭력 피해를 당하게 되면 자신감을 가지고 대화로 당당히 맞서되, 어려울 경우 자리를 피한 후 반드시 선생님이나 부모님 또는 친구 등에게 알리도록 지도합니다.
5. 상담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학교차원에서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임 선생님과 협의하여 공동 지도하도록 합니다.
6. 자녀에게 모범된 행동, 웃는 얼굴, 온정적인 말, 사랑으로 대화합니다.

### ◆ 학교폭력 사안 처리◆

1. 학교폭력 발생 후 학교에서는 사안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실시합니다.
2. 사안에 따라 2가지 경우로 처리됩니다.
  - 가. 학교장 자체 해결: 학교폭력전담기구 개최  
**(관련학생 측 모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고 경미한 사안에 해당하는 경우)**

#### (경미한 사안 기준)

- ✓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출한 진단서 회수 불가](#))
- ✓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피해가 복구되거나 복구해 줄 것을 확인하고 피해학생 측이 인정](#))
- ✓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전담기구 위원들이 보편적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
- ✓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 행위가 아닌 경우

- 나.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사안에 따라 조치를 받음
  - 위의 4가지 사항 중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않을 경우 및 사안이 심각할 경우 교육 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담당 장학사·교육 전문가들로 구성

#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학부모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소중한 자녀들이 항상 안전하고 따뜻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를 근절하여 폭력 없는 행복한 세상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 아동학대의 정의(아동복지법 제3조 제7항)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 2. 아동학대의 유형

일반적으로 아동학대의 유형에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그리고 방임으로 나타나며, 방임은 다시 물리적 방임,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의 형태로 나타난다.

## 3. 아동학대 유형 및 징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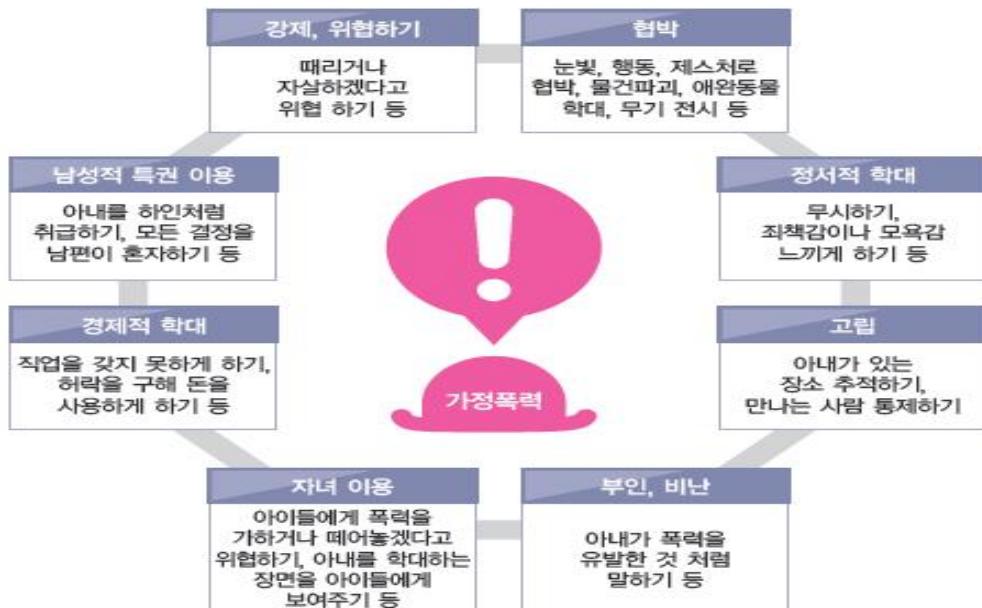
유형	징후
신체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사고로 보기에는 뭔가 미심쩍은 상흔</li><li>▶ 겨드랑이, 팔뚝, 허벅지 안쪽 등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li><li>▶ 사용된 도구의 모양이 나타나는 상처</li><li>▶ 담뱃불 자국, 뜨거운 물 화상 자국</li><li>▶ 신체적 상흔으로 자주 병원 간</li><li>▶ 공격 또는 위축된 극단적 행동, 부모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li></ul>
정서학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수면부족으로 인한 휴유증</li><li>▶ 언어장애, 비행, 기행, 퇴행, 스트레스로 인한 원형탈모</li><li>▶ 특정물건을 계속 뺄고 있거나 물어뜯음</li><li>▶ 갑작스런 폭력성향과 행동장애</li><li>▶ 히스테리, 강박, 공포 등 정신신경 반응</li><li>▶ 극단 과잉행동, 발달지연, 자살시도</li></ul>
성학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질에 새인 상처나 긁힌 자국 또는 흉진</li><li>▶ 항문 주변의 멍이나 찰과상</li><li>▶ 입천장의 손상, 성병 감염 및 임신</li><li>▶ 나이에 맞지 않은 성적 행동, 해박하고 조숙한 성 지식</li><li>▶ 타인, 동물, 장난감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인 상호관계</li><li>▶ 위축, 환상, 퇴행행동, 혼자 남아 있기를 거부</li><li>▶ 특정 유형의 사람들 또는 성에 대한 두려움</li></ul>
방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발달지연, 성장장애, 기아, 영양실조, 불균형 영양섭취</li><li>▶ 계절에 맞지 않는 옷, 청결하지 못한 외모</li><li>▶ 지속적 피로·불안정감 호소, 수업 중 조는 태도</li><li>▶ 특정한 사유 없이 무단결석</li><li>▶ 학교에 일찍 등교하고 집에 늦게 귀가</li><li>▶ 예방접종 등 의학적 치료 불이행, 건강상</li><li>▶ 비행 또는 도둑질</li></ul>

## 4. 아동학대 처벌

- 1) 신체학대.정서학대.방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2) 아동학대 치사-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3) 성학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5. 가정폭력이란?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폭력이란 수단을 가지고 상대방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또한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상상의 피해를 가져오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 6. 가정폭력(아동학대) 예방하기

- ▶ 부모의 언행은 항상 자녀의 모델이 됩니다. 언행은 신중히 생각하신 후 해주세요.
- ▶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체벌이나 일방적 훈계보다는 따뜻한 사랑으로 대하고 자녀와 대화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합니다.
- ▶ 필요 시 학교 선생님과 정보를 교환합니다.
- ▶ 자녀에게 생명의 존귀함, 상호 인권(인격)존중, 역지사지(易地思之), 책임 및 준법의식 등을 인식 시킵니다.
- ▶ 잘못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심한 처벌이나 질책보다는 사랑과 관심으로 지도합니다.

## 7. 가정폭력(아동학대)에 대처하기

- ▶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을 당하는 아이가 주변에 있다면 담임선생님 및 학교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그리고 112에 신고해 주세요.
- ▶ 나(학부모님)에게 발생했다면 112에 신고하세요. 자녀와 관련(비밀 전학 등)하여 상담이 필요할 때에는 담임선생님께 말씀해 드리세요.
- ▶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상담 전문 기관에 전화할 수도 있습니다.  
※ 신고자의 비밀이 보장됩니다. - 여성긴급전화 1366

# 학생 인권보호 교육

## 1. 학생 인권의 의미

### 1) 인권이란?

인권의 의미를 한마디로 정의하긴 어려우나 '사람이 사람답게 살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사람이 자유와 평등을 누리며, 인간적 생존권을 보장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인권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인간적 존엄을 보장 받으며, 인권친화적인 분위기에서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 2) 학생도 인권을 누릴 수 있나요?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을 인권의 주체라고 확인하면서 청소년을 위한 특별한 보호까지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아동이 신체적·정신적 미성숙으로 인하여 적절한 법적 보호를 포함한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국가의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호 의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초·중등 교육법」 제18조의 4에서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다시 한 번 학생이 인권의 온전한 주체이며, 학교에서도 인권을 보장하여야 함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 3) 학생인권은 어디까지 보장되나요?

인권은 개인의 권리 보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과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의무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인권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발현되고 완성된다."고 합니다. 즉, 자신의 인권이 소중한 만큼 타인의 인권도 존중해야 합니다. 따라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개인의 인권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받기도 합니다.

학생인권조례에서도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면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교사의 정당한 생활교육마저 거부하는 것은 학생인권 보장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 2. 차별받지 않을 권리

### 1) 조례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진다.

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교권보호 이해교육

## 1 추진 배경

- 가. 교권침해 사례 증가로 교권 실추 및 교원들의 사기저하
  - 최근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증가
  - 교육활동 침해로 교직만족도 저하 및 명예퇴직 증가
- 나. 교권 침해 발생 시 교원의 교육권뿐만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 침해
- 다. 교권침해로 인한 교원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사례 증가
- 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기 대응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필요
- 마. 교권과 학생인권이 공존하는 인권우호적인 학교 문화 정착 필요
- 바.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권침해 예방 및 대응 체계

## 2 교원침해의 유형과 실태

- 가. 교권침해 유형

구 분	교권침해 유형
학생	교원에 대한 폭언, 교원에 대한 폭행, 교사 성희롱, 수업 진행 방해, 지시 불이행, 재물손괴, 사이버 매체 폭력
학부모	교원에 대한 폭행, 교원에 대한 폭언 및 욕설, 부당한 인사 조치 요구, 고소·고발, 안전사고(민원 제기, 신분 위협, 무리한 피해 보상 요구)
교육행정기관, 학교행정관계자, 동료교사	교원에 대한 폭언, 교원에 대한 폭행, 교원에 대한 협박

- 나. 교권침해 현황 실태 분석 결과

- 교권침해 유형 중 폭언·욕설 건이 많아 사전예방을 위한 바른 언어사용 교육과 침해사안에 대한 엄중한 처벌 및 신속한 대처가 필요함
- 학생에 대한 올바른 인권교육 및 예절교육이 강화되어야 함
- 교권보호를 위한 교권보호지원센터의 법률지원 및 상담으로 교권침해 피해교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 3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 운영

- 가. 위원 구성

-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교원위원 · 학부모위원 · 외부위원들이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고 고르게 선출

- 나. 기능: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등의 조치

-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4 교권침해 대응 절차

### 가. 학교에서의 대응

절 차	대응 요령	유의 사항
사안 발생 및 학교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고현장 탈피 및 주변 교사에게 도움 요청</li> <li>○ 사안 발생 후 학교장에게 즉시 보고</li> <li>○ 학교장은 사안 인지 즉시 적극 개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격자 진술, 현장 증거 확보</li> <li>○ 학교장 중심 대응팀 구성</li> <li>○ 긴급 상황시 112, 119등에 신속히 신고</li> </ul>
사안 발생 즉시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중학교 ⇒ 지역교육지원청 ⇒ 도교육청</li> <li>○ 고등학교 ⇒ 도교육청(교원인사과)</li> <li>○ 교권보호 담당자 ☎ 239-3299</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원에 대한 신체 폭행, 흉기 소지 협박 및 위협 등 중대 사안은 즉각 유선 보고, 단, 경미한 사안은 학교 처리</li> <li>○ 교육지원청은 도교육청에 사안 보고 및 교권 보호 변호사 등의 지원을 받아 학교 현장 지원</li> </ul>
피해 교원 보호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폭행 피해 등 긴급 상황 발생시 112, 119등에 신고</li> <li>○ 학교장 피해교원 상담 및 안전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장 판단 하에 병가 또는 심각한 경우 질병 휴직 활용 안내</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가 피해 발생 방지 및 피해 교사 업무 대행자 지정</li> <li>○ 잘못된 사실관계 언론 공표 보안 유지</li> <li>○ 가해가 심할 경우 휴직, 비정기 전보 요청</li> </ul>
사안 처리 경과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기, 내용, 시기, 관련자 등 조사</li> <li>○ 가해자와 피해자 양측 면담 실시</li> <li>○ 증거 자료 확보</li> <li>○ 피해자 의견 확인(법률·행정적 처리 및 학생 징계 여부, 보상 요구 등)</li> <li>○ 사안 조사 내용 바탕으로 6하 원칙에 따른 상세 보고</li> <li>○ 보고 절차는 상급기관 보고와 동일</li> <li>○ 필요한 경우(학교장 판단) 사안처리 완결 시 까지 수시보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고 경위 파악 및 일지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미한 경우 – 학교 내 교육적지도</li> <li>- 심각한 경우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li> </ul> </li> <li>○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부모에게 통지, 교사에게 사과 유도</li> <li>- 선도위원회 개최 및 상담을 통한 교화</li> </ul> </li> <li>○ 교직원에 의한 교권침해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지원청과 협의 후 행정적 조치</li> <li>- 상급기관 보고</li> </ul> </li> <li>○ 학생 안전사고 관련 교권침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라북도 학교안전공제회에 지원 요청</li> </ul> </li> </ul>
조정 및 법적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 교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li> <li>○ 교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 사안이라고 여겨질 경우 학교장이 고발</li> <li>○ 학교 자체 고발이 어려울 경우 교육청과 사안 협의하여 교육감이 고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권보호 법률지원단(교권보호 법률 지원 고문변호사) 자문</li> <li>○ 교원과 학생·학부모 간 분쟁 발생시(미해결 시 지역 및 도교육청 협조 요청)</li> <li>○ 전라북도교권보호위원회 개최</li> </ul>
종결 및 후속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발 방지를 위해 사고 원인 분석 및 대응 방안 마련</li> <li>○ 사고 관련자들의 안정적 복귀 지원</li> <li>○ 우선 전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적인 관찰을 통한 재발 방지</li> <li>○ 가해자, 피해자 상담 및 치료</li> </ul>

# 2022 학교생활기록부 안내

학교생활기록부,  
더욱 엄격히 관리합니다!



-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관리를 위한 책무성을 강화하였습니다.
  - 단위학교에서는 매년 학교생활기록부 자체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3회 이상 확인·점검합니다.
  - 교육청에서는 매년 소속 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감독합니다.
  
- ▶ 학생부는 교사가 직접 관찰한 내용을 기재해야 하며, **학생으로부터 기재할 내용을 제출받아 기재하는 '셀프 학생부'**는 위법행위입니다. 시도교육청 현장 점검 시 서술형 항목 기재 내용을 학생에게 제출받아 기재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허위 사실 기재는 '학생 성적 관련 비위'로 간주되어 징계 양정 기준이 적용되며, 징계 감경에서도 제외됩니다.

- ▶ 학생 및 학부모가 사교육기관 컨설팅 자료를 교사에게 제공하는 등 학교생활기록부의 부당한 기재 및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행위입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10.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 제6조(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 2022 학년도 학사 일정

<1학기>

월	요	3월	월	4월	요	5월	월	6월	요	7월	월	8월	
1	화	3.1절	금	1학기 리더십 캠프 구강경시(2,3,5,6학년) (+30)	일	근로자의 날	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금		월	음악캠프(1-3) 영어영화캠프(1-3)	
2	수	인천시립문화재활용 전시관축제(2~4)	토		월	스포츠페스티벌 5학년	목		토		화		
3	목	방과후학교 시작일 전교여성리아회 후보자 등록(3~4)	일		화	스포츠페스티벌 6학년	금	아버지찾아수업 (3~6학년)	일		수		
4	금	학교폭력예방교육	월	양성평등교육주간 (4-6) 다도인성예절교육 (3-1,3-2,5-2)	수	스포츠페스티벌 2학년 (4.2-5.4)	토		월		목		
5	토		화	신보의 다도인성예절교육 (2-1,2-2,5-3)	목	어린이날	일		화		금		
6	일		수	아름리스선교제 (1-3,4-6) 다도인성예절교육 (2-3,1-3,5-1)	금	재량휴업일	월	현충일	수	이촌활동	토		
7	월	학생준비(7~11)	목		도		화		목		일		
8	화		금	다도인성예절교육 (1-1,1-2)	일	부처님 오신 날	수		금		월		
9	수	제20대 대통령 선거	토		월	인천교육주간(3-6학년)	목		토		화		
10	목	학교여성리아회조직 (4학년-6학년)	일		화		금		일		수	국악캠프(10~12)	
11	금	전교여성리아회조직 (4학년-6학년)	월	다도인성예절교육 (6-2,6-1)	수	시체별달 시련검사 (2,3,5,6학년)	토		월	진로교육주간 (11-15)	목		
12	토		화	다도인성예절교육 (6-3)	목	학교공개의 날 나눔비자회	일		화	진로체험학습의 날	금		
13	일		수	이촌활동	금	학부모교양대학	월	정보통신윤리주간 (13~17)	수	학급비전발표회	토		
14	월	방송기자신문기자 임명 교실환경공유	목		토		화		목		일		
15	화	개교기념일	금	굿네이버스 성폭력예방교육 1학년	일	교육자대회	수		금		월	광복절	
16	수	교육과정설명회	토		월		목		토		화	오케스트라캠프 (16~18)	
17	목		일		화	아버지찾아수업 (1-2학년)	금		일	제현절	수		
18	금		월	1학년 교육설습주간 (18-22)	수		토		월		목		
19	토		화		목		일		화		금		
20	일		수	STEAM 체험의 날	금	현장 체험학습 (1-6학년)	월	통일교육주간(20-23) 방과후학교 수업교체(20-7.1.)	수		토		
21	월	교육설습주간(21~31) 안전교육주간(1-2학년)	목	장애인해교육 (2교시)	토		화		목	진로직업체험학습 (6학년)	일		
22	화		금		일		수		금		월	가족신 친구시행주간(22-25)	
23	수	이촌활동	토	호남권부설워크숍	월	4학년교육설습 (5.23-6.17)	목	온구학교-이석호예절 (3-4학년)	토		화		
24	목		일		화		금	역사팀별방학 전부연워크숍(24-25)	일		수	(2학기 시작일)	
25	금		월	학생건강경진(1,4학년)	수	이촌활동	토		월		목	학급여성리아회조직 (4학년-6학년)	
26	토		화	소변검사 (2,3,5,6학년)	목		일		화	여름방학식	금	학교폭력예방교육 28기리더십캠프(25-27)	
27	일		수	스포츠페스티벌 1학년 (4.2-5.4)	금		월		수	비전·도서·과학·9월 진로설명회(27-28) 기초영어캠프(27-28)	토		
28	월		목	스포츠페스티벌 3학년	토		화		목		일		
29	화		금	스포츠페스티벌 4학년	일		수	이촌활동	금		월	양성평등교육주간 (8.29-9.2.)	
30	수	다도인성예절교육 (4-2,4-3)	토		월		목	온구학교-이석호예절 (3-4학년)	토		화	1190전체체험(2,5학년)	
31	목	다도인성예절교육 (4-1,3-3)			화				일		수		
휴일 일수		11		9		11		11		13		55	
출석 일수		20		21		20		19		18		98	
1학기		2022.3.1.~ 2021.8.23.						수업일수: 100일				총일: 76일	

## <2학기>

월	요	9월	월	10월	요	11월	월	12월	월	23년/1월	월	23년/2월
1	목	국기훈련(5-6학년) (1-2)	토	국군의 날	화	신입생원서접수(1-4)	목		일	신정	수	영어캠프(1-3)
2	금	국기훈련(1,2,3,4학년)	일		수		금		월		목	
3	토		월	개천절	목		토		화	독서·과학캠프(3-4)	금	
4	일		화	데마식현장체험학습 (6학년)(4-6)	금	팔미동산 종합학습발표회	일		수		토	
5	월	교육상담주간 (5-8)	수		토		월		목	비전캠프(5-6)	일	
6	화		목		일		화		금		월	개학식 진로교육주간(6-10)
7	수		금	현장체험학습 (1~5학년)	월		수		토		화	
8	목		토		화		목		일		수	
9	금	추석연휴	일	한글날	수	연구학교 성과보고회	금		월	오카스트캠프(9-11)	목	
10	토	추석	월	대체공휴일	목	교직원심폐소생술	토		화	신입생예비소집	금	종업식, 출업식
11	일	추석연휴	화		금	신입생 추첨등록	일		수		토	
12	월	대체공휴일	수	이촌활동	토		월		목		일	
13	화	재량휴업일	목	뮤직페스티벌 총연습	일		화		금		월	
14	수	이촌활동	금		월	3학년 교생수업실습 (14-12-9) 정보통신윤리주간 (14~18)	수	이촌활동	토		화	
15	목		토		화		목		일		수	
16	금		일		수		금		월	국어캠프(16-18)	목	
17	토		월	2학년 교생창문설습 (17-21)	목		토		화		금	
18	일		화	독후말하기 대회 (1학년-3학년)	금	신입생 적성검사	일		수		토	
19	월	도농교류활동(1-6학년) (19-23)	수	이촌활동	토		월	5학년 영어체험센터 (19-23)	목		일	
20	화		목	독서토론회(4학년-6학년)	일		화		금		월	
21	수		금		월		수		토	설연휴	화	
22	목		토		화		목		일	설날	수	
23	금	교육가족돌레길걷기 (23-24)	일		수		금		월	설연휴	목	
24	토		월	독도교육주간(24-25)	목		토		화	대체공휴일	금	
25	일		화	독도의 날 계기교육	금		일	성탄절	수		토	
26	월	영어골든벨(3-6학년) (26-30)	수	필마동산 종합학습발표회총연습	토		월		목		일	
27	화	부설컵(3)	목		일		화	겨울방학식	금		월	
28	수	부설컵(4)	금	뮤직페스티벌	월		수	진로상담캠프(28-29) 기초영어캠프(28-30)	토		화	
29	목	부설컵(5)	토		화		목		일			
30	금	부설컵(6)	일		수		금		월			
31			월	방과후학교수업공개 (10.31-11.11)			토		화			
총일수		11		12		8		12		31	74	23
출석일수		19		19		22		19		0	79	5
2학기		2022.8.24. ~ 2023.2.28.							수업일수: 90일		휴일수: 99일	
여름방학(26일) 2022.7.27.~ 8.21.				겨울방학 (40일) 2022.12.28.~ 2023.2.5.				학년말방학(18일) 2023.2.11.~ 2023.2.28.				
※ 수업일수 : 1학기 100일, 2학기 90일 계: 190일												